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47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인한 변경

[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]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
기금 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64,750	164,750	-	사 업 비	기금 융자금	200,000	200,0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3,790	3,790	-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	86,200	86,900	700
			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
			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
예 치 금 회 수	85,880	158,248	72,368	재 무 활 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0	10,000	10,000
기타(일반)회계 전 입 금	40,000	50,700	10,700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420	2,420	-
					예치금	4,294	76,662	72,368
					기본경비	5	5	-

[2025년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	비 고
합 계	294,420	377,488	83,068	
중소기업 금융지원	287,701	288,401	700 (0.24%)	
중소기업 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	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86,200	86,900	7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301	301	-	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1,200	1,200	-	
행정운영경비	5	5	-	
기본경비(기금)	5	5	-	
재무활동	6,714	89,082	82,368 (1226.8%)	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	2,420	12,420	10,000	
예수금원금상환	-	10,000	10,000	·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반영
예수금이자상환	2,420	2,420	-	
예치금	4,294	76,662	72,368	·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

Ⅲ. 검토의견¹⁾

○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4회 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증가(723억 6,800만원)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한 기타(일반)회계전입금(107억원)을 증액하고자 수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

- 지출계획 ①**재무활동**도 예치금(723억 6,800만원)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을 증액하고, ②**중소기업 금융지원**중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(7억원)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①**재무활동(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)**은 당초 지출계획(67억 1,400만원)보다 1,226.8%, 823억 6,800만원³⁾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○ 아울러 다른 정책사업인 ②**중소기업 금융지원**의 경우, 수출기업중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7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(2,877억 1,000만원)보다 0.2%, 7억원 증가되는 것이기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

1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±0.1% 범위내) 차이 있음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예치금 723억 6,800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원

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 초 (A)	기 운 계 변 경 안 (B)	금 용 회 계 안 (C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	294,420	377,488		83,068	28.2
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		287,701	288,401		700	0.2
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(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)		287,701	288,401		700	0.2
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		200,000	200,000		-	-
시중은행합작자금지원 이차보전금		86,200	86,900		700	0.8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	301	301		-	-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	1,200	1,200		-	-
재 무 활 동 (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)		6,714	89,082		82,368	1226.8
내 부 거 래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)		2,420	12,420		10,000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 리 금 상 환		-	10,000		10,000	순증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 리 금 상 환		2,420	2,420		-	-
보 전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)		4,294	76,662		72,368	1685.3
예 치 금		4,294	76,662		72,368	1685.3
행 정 운 영 경 비 (중소기업육성기금)		5	5		-	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(융자계정) 지출계획

②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5. 5.26) 재구성
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**예치금**으로 적립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변경한 내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⁴⁾

4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용도)

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,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⁵⁾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-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 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
-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설,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결을 요청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지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,
-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,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
2.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3.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4.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
5.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5) 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